

#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20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3. .  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및 학자금 등의 용자를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여 왔으나,
- 나. 2013년 이후 용자사업 실적이 전무하고, 2015년 보건복지부 「지방자치단체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검토 및 추진계획」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하남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」 폐지
- 나. 경과조치 : 특별회계 운용자금 일반회계로 귀속(부칙2조)

## 3. 폐지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국가재정법 제15조(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·폐지)
- 지방재정법 제9조(회계의 구분)
- 지방재정법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
-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

## 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7. 입법예고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1. 1. 21. ~ 2021. 2. 9. [20일간]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# 8. 부서협의 사항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없음

## 9. 참고사항

- 경기도 시·군 생활안정자금 운영 현황
- 생활안정자금 유사 융자사업 현황
- 지방자치단체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(보건복지부)

## 10. 관련부서 : 해당없음

##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폐지 조례안

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용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」에 따른 하남시의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·의무는 하남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.

② 종전의 「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용자조례」에 따른 하남시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의 2020회계연도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, 용자금 회수수입 등은 하남시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.

부서명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과장 신우철
	팀장 직위·성명	생활보장팀장 유혜림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성소민 (790-5779)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□ 「국가재정법」

제15조(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·폐지)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.

1. 설치목적은 달성한 경우
2.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4.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 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- 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-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6. 9.]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> [전문개정 2011. 8. 4.]

**참고1****경기도 시·군 생활안정자금 운영 현황**

(2021. 1월 현재)

구 분	계	시·군명
폐 지	20	광주시, 군포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, 부천시, 수원시, 시흥시, 안산시, 안성시, 연천군, 용인시, 이천시, 평택시, 포천시, 화성시, 오산시, 의왕시, 구리시, 김포시, 안양시
폐지 검토	1	양주시
존 속	9	파주시, 의정부시, 여주시, 양평군, 성남시, 고양시, 과천시, 광명시, 가평군

## 참고2

## 생활안정자금 유사 용자사업 현황

### I

### 전세보증금 용자

#### ○ 경기도, LH,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권 등

금융상품명	취급기관	대상	대출한도 (최대,만원)	금리 (연,%)	대출기간 (연)
경기도 전세자금 대출	경기도	수급자 차상위	4,500	2 (지원)	4
국민연금 실버론	국민연금공단	금융취약계층	1,000	1.37	5
LH기존전세임대주택	LH	수급자 차상위	9,000	1~2	20
경기도시공사 전세보증금 지원사업	경기도시공사	무주택자	10,000	2	6
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	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	근로자, 사업자, 청년	10,000	1.2	10
버팀목전세자금	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	근로자, 사업자	12,000	2.3~2.9	10
내집마련디딤돌대출	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	근로자, 사업자	20,000	2.0~3.15	10, 15, 20, 30
보금자리론	한국주택금융공사 , 취급은행	금융취약계층	30,000	2.2~2.55	10, 15, 20, 30
사잇돌 중금리대출	취급은행	금융취약계층	20,000	2.0~3.15	10, 15, 20, 30
새희망홀씨2	취급은행	수급자 한부모 다문화가정	3,000	5.98	7
햇살론	취급은행	금융취약계층	7,000	4.5	3, 5
지역사랑전세대출	부림저축은행	금융취약계층	5,000	2	5

## II

### 학자금 용자

#### ○ 학자금상환대출, 구리시민장학회, 자활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

금융상품명	취급기관	대상	대출한도 (최대,만원)	금리 (연,%)	대출기간 (연)
희망사다리론_학자금	신용회복위원회	채무조정자	1,000	2.0	5
햇살론youth	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대출협약은행	근로자, 대학생·청년	1,200	3.5	15
사회복지론	신용회복위원회	채무조정자	1,500	2.0~4.0	5
새출발 마중물론	신용회복위원회	채무조정자	1,500	2.0~4.0	5
경기도 재도전론	신용회복위원회	채무조정자	1,500	1.0~2.5	5
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(든든학자금대출)	한국장학재단	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	등록금 전액	1.85	
일반 상환 학자금대출	한국장학재단	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	9,000	1.85	20
생활안정자금 용자(자녀학자금)	근로복지공단	근로자	1,000	1.5	5

(보건복지부)

**□ 추진배경**

- 보건복지부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「지방자치단체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」을 의결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자체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보함
-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·중복성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파악하여 대상사업 통보함

**□ 정비대상**

- 하남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용자
  - 대상 : 수급자 등 생계가 곤란한 자
  - 상업자금, 생계자금, 전세자금 : 1,000만원 이내(3%, 1년거치, 72개월 분할상환)
  - 학자금:(고등학교)연 60만원 이내 (대학교)연 200만원 이내(무이자, 3년거치, 3년 분할상환)
  - 유사 중앙사업 : 버팀목전세자금대출/저소득층생업자금/든든학자금대출

**□ 정비계획**

- 하남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용자
  - 정비대상 사업 출처 : 정비대상 목록에 포함된 사업
  - 정비기준 : 중앙정부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
  - 정비유형 : 단계적 폐지

## □ **관련문서**

- 지방자치단체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지침통보  
(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-21456(2015.08.18.))
  
- 지방자치단체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검토목록 및 추진계획제출요청  
(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-21923(2015.08.22.))
  
- 지방자치단체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제출  
(주민생활지원과-37587(2015.12.29.))